

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(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)

[] 확정신고 [] 수정신고 [] 기한후신고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 접수번호	-
--------	---

수증자	② 성명	③ 주민등록번호	④ 전자우편주소
	⑤ 주소	(전화번호)	
증여자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	
	⑧ 소재지	(전화번호)	
수혜법인	⑨ 법인명	⑩ 사업자등록번호	
	⑪ 법인구분	1.상호[], 2.일반[], 3.중견[], 4.중소[]	
세무대리인	⑫ 성명(상호)	⑬ 사업자등록번호	
	⑭ 관리번호	⑮ 생년월일	⑯ 전화번호

증여재산가액						
⑰ 증여일	구분	⑱ 세후영업이익	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5%(50%, 20%)	⑳ 주식보유비율 -0%(10%, 5%)	㉑ 배당소득 공제	㉒ 증여재산가액
	직접					
	간접					
계						

구분		금액	구분		금액
㉓ 증여세과세가액			㉔ 납부지연가산세		
㉕ 과세표준			㉖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(㉔-㉔+㉔+㉔)		
㉗ 세율			납부방법	납부 및 신청일자	
㉘ 산출세액			㉙ 연부연납		
㉚ 신고세액공제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9조)			현금	㉛ 분납	
㉜ 신고불성실가산세				㉝ 신고납부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(전화번호 :)
세무서장 귀하

제출서류	1.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.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.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재무제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등본 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, 수증자별,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
- "① 접수번호"란: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-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의 란: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②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"대표법인 외 ○"(으)로 적습니다.
- "⑨ 법인명"란: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"⑩ 사업자등록번호"란: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"⑪ 법인구분"란: 수혜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"상호"에 ○(으)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)인 경우에는 "중소"에 ○(으)로, 수혜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(이하 "중견기업")인 경우에는 "중견"에 ○(으)로,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"일반"에 ○(으)로 표시합니다.
- "⑭ 관리번호"란: 「세무사법」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- "⑮ 생년월일"란: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(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)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- "⑰ 증여일"란: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- "⑱ 세후영업이익"란, "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-5%(50%, 20%)"란, "⑳ 주식보유비율-0%(10%, 5%)"란, "㉑ 배당소득공제"란 및 "㉒ 증여재산가액"란: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)"의 ⑨란, ⑭란, ⑮란, ⑯란, ⑰란, ⑱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(평균)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. 이 경우 "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-5%(50%, 20%)"란은 201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%를 차감하며, 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차감하며, 2017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%를 차감하며,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%를 차감합니다. 또한, "⑳ 주식보유비율-0%(10%, 5%)"란은 201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%를 적용하며, 2014.1.1.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를 차감하며,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를 차감합니다.
- "㉕ 세율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.

증여세 세율표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1억원 이하	10%	-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20%	1,000만원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30%	6,000만원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40%	16,000만원
30억원 초과	50%	46,000만원

- "㉖ 산출세액"란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$$[(\text{㉒ 과세표준} \times \text{㉕ 세율}) - \text{"5. 증여세 세율표"에 따른 누진공제액}]$$
-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"㉘ 신고불성실가산세"란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2, 제47조의3,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, "㉙ 납부지연가산세"란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4, 제47조의5,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.
- "㉚ 분납"란: 납부할 금액(㉖-㉗)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"㉛ 신고납부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
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Ⅰ. 수증자 및 증여자

가. 수혜법인

①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③ 소재지	④ 사업연도	⑤ 법인구분

나. 수혜법인의 지배주주

㉠ 최대주주등	⑥ 주주명	⑦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⑧ 관계	⑨ 지분율	⑩ 최대주주	비고
	계					

㉡ 간접보유 비율 (㉑이 법인인 경우)	㉑ 간접출자법인		㉒ 수혜 법인 등 지분율	㉓ 주주명	㉔ 주민 등록번호	㉕ 지분율	㉖ 간접보유비율 (㉒×㉕)
	법인명						
사업자 등록번호							

㉢ 지배주주	㉑ 최대주주등 중 직접・간접보유비율 이 가장 큰 개인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다.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

⑰ 주주명	⑱ 주민등록번호	⑲ 관계	직·간접 지분율		⑳ 지분율 합계	㉑ 수증자 해당 여부 (㉒>3%(10%))
			㉒ 직접 지분율	㉓ 간접 지분율		
		지배주주				

라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

㉔ 법인명	㉕ 사업자 등록 번호	㉖ 유형	㉗ 수혜법인의 매출액 (라-1의 ㉔ 매출 소계)	매출액 조정	㉘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(라-1의 ㉓)	㉙ 과세요건 해당 여부 (㉚>30%(50%·40%·20%))
				㉚ 제외매출액(라-1의 ㉕ 소계)		
				㉛ 과세제외매출액 (라-1의 ㉖ 소계)		

작성방법

1. "㉔ 사업연도"란에는 수해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, "㉕ 법인구분"란에는 수해법인의 법인구분(상호, 일반, 중견, 중소)을 적습니다.
2. ㉖부터 ㉙까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해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, 지분율을 적습니다.
3. "㉚ 최대주주"란에는 ㉙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○ 표시합니다.
4. "㉛ 간접보유비율"은 ㉙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) 법인주주(㉙)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(㉙)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, 2)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(㉙)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"나-1. 수해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)"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.
5. "㉜ 수해법인등 지분율"란은 "㉛ 간접출자법인"의 수해법인에 대한 지분율(㉙)을 적습니다.
6. "㉝ 간접보유비율"란은 각 주주별 "㉜수해법인 등 지분율"×"㉛지분율"의 비율을 적습니다.
7. ㉞부터 ㉟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해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.
8. "㊱ 지배주주"란은 (1) ㉞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, (2) ㉞의 최대주주가 법인(㉙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(㉙)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㉞의 간접보유비율과 ㉙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 주주[간접출자법인(㉙)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]의 성명을, (3) ㉞의 최대주주가 법인(㉙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(㉙)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"나-1. 수해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)"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㉙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(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)의 성명을 적습니다.
9. ㊱부터 ㊳까지는 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,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10. "㊴ 직접지분율"란은 "㉙ 지분율"을 "㉛ 간접지분율"란은 "다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(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) 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)"의 "㉝ 간접보유비율"(수해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)을 "㉚지분율 합계"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.
11. "㊵ 수증자 해당 여부"란은 ㉚의 지분율이 3%(수해법인이 중소·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)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○표시를 합니다.
12. ㊶부터 ㊸까지는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 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를 작성한 후 "㊶ 법인명"란과 "㊷ 사업자등록번호"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, ㊷부터 ㊸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.
13. "㊹ 수해법인의 매출액"은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적습니다.
 - 가. 사업부문별로 자산·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
 - 나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
14. "㊺ 과세요건 해당 여부"란은 "㊻ 2017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"이 30%(수해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%, 2018. 1. 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해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"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*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%)를 초과하는 경우 ○표시를 합니다.

* 수해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: 1천억원 × (사업부문별 매출액 ÷ 전체 매출액)

나-1.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⑪ 간접출자법인			⑫ 수혜법인 지분율	⑬ 주주명	⑭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⑮ 지분율	⑯ 간접보유비율 (⑫×⑮)				
①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② 2차법인 [간접출자법인 (①)에 출자 한 법인]	㉠ 출자법인		㉡ 간접출자 법인지분율	㉢ 주주명	㉣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㉤ 지 분율	㉥ 간접보유비율 (⑫×㉡×㉤)				
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③ 3차법인 [2차법인 (②)에 출자 한 법인]	㉦ 출자법인		㉧ 간접출자 법인지분율	㉨ 주주명	㉩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㉪ 지 분율	㉫ 간접보유비율 (⑫×㉡×㉤×㉪)				
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	법인명										
	사업자등록 번호										

작성방법

※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(㉔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(㉔)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.

1. ⑪부터 ⑮까지는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(㉔)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,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 등을 적으며, 그 법인주주(㉔)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,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2. "⑮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(⑫)에 각 주주의 지분율(⑮)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.
3. "㉑ 출자법인"란은 위 법인주주(㉔)의 주주가 법인(㉕)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, ㉒부터 ㉖까지는 그 법인(㉕)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㉔)에 대해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4. "㉓ 출자법인"란은 간접출자법인 ㉕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(㉔)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5. "㉖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(㉕)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㉔법인에 대한 ㉕법인의 지분율(㉒)과 ㉔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(⑫)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6. "㉗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(㉔)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㉕법인에 대한 ㉔법인의 지분율(㉒)과 ㉔법인에 대한 ㉕법인의 지분율(㉒) 및 ㉔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(⑫)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
다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(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

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		② 수혜법인 지분율	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			⑥ 간접보유비율 (②×⑤)
			③ 주주명	④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⑤ 지분율	
법인명						
사업자						
등록번호						

2.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

⑦ 2차 법인주주		⑧ 지분율	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			⑫ 간접보유비율 (②×⑧×⑪)
			⑨ 주주명	⑩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⑪ 지분율	
법인명						
사업자						
등록번호						

⑬ 3차 법인주주		⑭ 지분율	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			⑮ 간접보유비율 (②×⑧×⑭×⑰)
			⑮ 주주명	⑯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⑰ 지분율	
법인명						
사업자						
등록번호						

3.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

구분	수혜법인의 법인 주주(①)	2차 법인주주(⑦)	3차 법인주주(⑬)	4차 등 법인주주
⑰ 지배주주등이 30% 이상 출자				
⑱ 지배주주등과 ⑰의 법인이 50% 이상 출자				
⑲ 2차, 3차 등 법인이 위 ⑰ 또는 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				
⑳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				

4.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

㉓ 주주명	㉔ 관계	㉕ 간접보유비율 [간접출자법인(㉔) 해당 간접보유비율]	비고
	지배주주		

작성방법

※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"㉔ 지분율"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을 산정시 작성하며, 수해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
1. "① 수해법인의 법인주주"란과 "② 수해법인 지분율"란은 수해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해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2. ③과 ④에는 수해법인의 법인주주(㉑)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㉒)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적으며, ⑤란은 법인주주(㉑)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3. "⑥ 간접보유비율"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해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.
4. "⑦ 2차 법인주주"란은 "① 수해법인의 법인주주"(㉑)의 주주(㉓)가 법인(㉔)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, "⑧ 지분율"란은 그 법인(㉔)의 수해법인 법인주주(㉑)에 대한 지분율(⑤)을 적습니다.
5.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(㉒)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㉓)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6. "⑫ 간접보유비율"란은 "⑪ 지분율"과 "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", "② 수해법인 지분율"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.
7. "⑬ 3차 법인주주"란과 "⑭ 지분율"란은 ⑦ 2차 법인주주(㉒)의 주주(㉕)가 법인(㉖)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(⑪)을 적습니다.
8. ⑮부터 ⑰번란은 3차 법인주주(㉓)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(4차,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).
9. "3.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"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, ⑱부터 ㉔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○・×로 기재한 후, "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"란에 그 결과를 ○표시 합니다.
 1.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 2.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 3.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해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

<사례>

구분	수해법인의 법인주주(①)	2차 법인주주(⑦)	3차 법인주주(⑬)	4차 등 법인주주
⑲ 지배주주등이 30%이상 출자	×	×	○	×
㉒ 지배주주등과 ⑲의 법인이 50% 이상 출자	×	×	×	×
㉓ 2차, 3차 등 법인이 위 ⑲, ㉒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	○	○	×	×
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	○	○	○	

10. "㉕ 주주명"란과 "㉖ 간접보유비율"란은 ㉔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(①, ⑦, ⑬ 등)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(⑥, ⑫, ⑰ 등)을 합하여 적습니다.

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

[illegible]

2.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

⑪ 대표 증여자 법인명 (특수관계법인)	⑭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
⑫ 수혜법인의 총매출액	⑮ 과세매출비율
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(과세요건)	⑯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(증여의제이익)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수해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,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 중 "⑥ 과세제외 매출액"과 "⑦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"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"⑦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"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1. "① 법인명"란부터 "③ 특수관계유형"란까지는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 나-㉔의 지배주주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란에는 수해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"⑤ (부칙)제외매출액"란은 2014. 2. 21. 개정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해법인이 제품·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, "⑧ 사유"란은 "제품, 상품" 또는 "의무"로 적습니다. "⑨ 조정후 매출액"란은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에서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"⑥ 과세제외매출액"란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, "⑧ 사유"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.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.
5. "⑩ 소계"란에는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,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, "⑥ 과세제외매출액",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, "⑨ 조정후 매출액"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6. "⑪ 대표 증여자 법인명(특수관계법인)"란 및 "⑭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"란은 "⑨ 조정 후 매출액"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("⑨조정 후 매출액(④-⑤-⑥-⑦)"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)
7. "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(과세요건)"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,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의 "⑩ 소계"에서 "⑥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8. "⑮ 과세매출비율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,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. 즉, 수해법인의 "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"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 및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"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"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9. "⑯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(증여의제이익)"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,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의 "⑩ 소계"에서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과 "⑥ 과세제외매출액" 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 금액"과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
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Ⅱ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Ⅱ. 증여세 과세가액

가. 세후 영업이익

① 영업손익	② 세무조정	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(①±②)	법인세상당액		
			④ 산출세액	⑤ 공제·감면세액	⑥ 차감후세액 (④-⑤)
	+				
	-				
⑦각 사업연도소득		⑧ 과세매출비율(라1.의 ⑮)		⑨ 세후 영업이익 [③-{⑥×(③/⑦)}]×⑧	

나.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

⑩ 수혜법인 매출액 (라1.의 ⑫)	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(라1 ④의 ⑩소계)	과세제외매출액		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(⑪-⑫-⑬)/(⑩-⑬)	⑮ 초과비율 (⑭-5%) 또는 (⑭-50%) 또는 (⑭-20%)
		⑫ 제외매출액 (라1의 ⑤의 ⑩소계)	⑬ 과세제외매출액 (라1.의 ⑥+⑦의 각 ⑩소계)		

다.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

⑯ 주주명 (수증자)	⑰ 직접보유비율	⑱ 간접보유비율	⑲ 보유비율(0%, 10% 또는 5% 초과 보유비율) [⑱ 에서 10%(5%) 우선 차감]	
			⑳ 직접보유비율	㉑ 간접보유비율
계				

라.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

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(⑨×⑮×㉑)	
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 (⑨×⑮×㉑)	

마. 배당소득의 공제

㉔ 수혜법인의 배당 시		㉕ 배당소득		㉖ 배당가능이익		㉗ 직접보유비율(17)		㉘ 공제대상금액 ㉕ × [(㉒ / (㉕ × ㉗))]	
㉙ 간접 출자 법인의 배당시	㉚ 배당소득	㉛ 배당가능이익	㉜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(㉖)		㉝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		㉞ 간접출자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		㉟ 공제대상금액 (㉚ × [㉜ / { (㉛ + ㉞ × ㉟) } × ㉜])
㉞ 증여세 과세가액		㉟ 직접보유분(㉒-㉓)							
		㊱ 간접보유분(㉓-㉜)							
㊱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(㉟+㊱)									

작성방법

- "① 영업손익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.
- "② 세무조정"란은 "① 영업손익"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.
 - 「법인세법」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
 -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
 - 「법인세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
 - 「법인세법」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
 -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
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
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
- "④ 산출세액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.
- "⑤ 공제·감면세액"란은 공제·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- "⑦ 각 사업연도소득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- "⑧ 과세매출비율"란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 ⑮의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⑨ 세후 영업이익"란은 "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"에서, "⑥ 차감후세액"에 "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"이 "⑦ 각 사업연도 소득"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, "⑧ 과세매출비율"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⑩ 수혜법인 매출액"란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서식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의 ⑫를 적으며, ⑪, ⑫, ⑬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(증여자 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의 ④, ⑤, (⑥+⑦)의 ⑩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"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"란은, 각 수증자별로 "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"에서 과세제외매출액(⑫+⑬)을 차감한 금액을 "⑩ 수혜법인의 매출액"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"⑬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"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⑮ 초과비율"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"에서 50%를 차감하며, 중견기업은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%(2017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%, 2017.1.1.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%)를 차감하며,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 차감한 비율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%)을 적습니다.
- "⑯ 주주명"란은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려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"⑰ 간접보유비율"란은 "다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(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와 간접보유비율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)"의 ⑮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,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"⑱ 보유비율(0%, 10% 또는 5% 초과 보유비율)"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⑳ 직접보유비율"과 "㉑ 간접보유비율"에서 10%를 차감하고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%)를 차감하며,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(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%를 차감)을 적습니다. 이때 "㉒ 직접보유비율"과 "㉓ 간접보유비율"에서 10% 또는 5%를 차감하는 순서는 1) 간접보유비율(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), 2)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.
- "㉔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란 및 "㉕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란은 "⑨ 세후 영업이익"에 "⑮ 초과비율"과 "㉔ 직접보유비율" 및 "㉕ 간접보유비율"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.
-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"㉔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 및 "㉕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에서 각각 공제하되,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.

$$\text{㉔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} \times \frac{\text{㉔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}}{\text{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 \times \text{㉔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}}$$

$$\text{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} \times \frac{\text{㉔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}}{[\text{㉔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 + (\text{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 \times \text{㉔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})] \times \text{㉔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}}$$

※ "㉔ 배당가능이익", "㉔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"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※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(2차 간접출자법인)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(3차 간접출자법인)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"㉔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"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.